노인 및 입주자
인권보호 지침

재단법인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파 티 마 홈

상 세 목 차

노인 및 입주자 인권보호 지침 ····· 3
1. 목적 ····· 3
제1장 노인 및 입주자 인권보호 ····· 3
1. 인권이란 ····· 3
2. 노인 인권이란 ····· 3
3. 입주 이전 단계의 인권 보호 ····· 4
4. 입주 초기 단계의 인권 보호 ····· 5
5. 입주 생활단계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 ····· 5
6. 퇴거 단계의 인권 보호 ····· 7
제2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7
1. 노인학대의 정의 ····· 7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행위 ····· 7
3. 노인학대 예방 방안 ····· 8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 8
5. 노인학대 사례 개입 ····· 9
[별지1] 노인학대판정지표 ····· 12

노인 및 입주자 인권보호 지침

1. 목적

가. 본 지침은 시설 입주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본 지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명시하고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 입주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노인 및 입주자 인권보호

1. 인권이란

인권이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2.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1) 자립 (Independence)

- ㅇ노인은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은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한 환경이나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

- ㅇ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ㅇ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ㅇ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Care)

- ㅇ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ㅇ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ㅇ노인은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하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ㅇ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노인은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ㅇ노인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ㅇ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Dignity)
ㅇ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ㅇ노인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나.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ㅇ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ㅇ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
ㅇ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ㅇ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ㅇ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ㅇ정치적·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ㅇ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ㅇ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해결을 요구할 권리
ㅇ시설 입·퇴거,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입주 이전 단계의 인권 보호

가. 시설정보 접근에서의 인권 보호

1) 입주 전 단계에 있어서 충실한 정보의 제공

입주를 검토하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보호자)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ㅇ시설에 관한 사전정보제공
ㅇ시설 생활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ㅇ시설 운영 및 입주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나. 입주상담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1) 입주관련 서류 및 입주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 환경 조성

다. 입주 결정과 입주계약과정에 있어서 인권 보호

ㅇ입주 결정에 있어서 예비입주자의 선택권 보장

ㅇ입주에 있어서 입주희망자에 대한 차별금지

4. 입주 초기 단계의 인권 보호

가. 인권 친화적으로 시설 생활을 안내

1) 입주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2)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나.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입주자 참여 보장

1) 사정 과정(Assessment)에 있어서 참여보장
2) 서비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3) 서비스 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 보호
: 인권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위한 사정과 목표설정
4) 입주자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다. 입주자의 초기적응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지원제공

1) 적절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2)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보장
3)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제공

5. 입주 생활단계에 있어서의 인권 보호

가. 입주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1) 기본원칙

ㅇ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ㅇ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ㅇ종사자들은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의사존중

ㅇ입주자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의사 표현에 제한이 있는 경우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ㅇ입주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입주자와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표정, 상태 등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한다. 신체접촉을 시도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는다.

3) 노동활동

ㅇ노동활동 참여는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 선택과 동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의 필요 때문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원해서는 안 된다.

ㅇ정원 가꾸기 등 정서함양을 통한 치료적 목적을 지닌 노동활동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입주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ㅇ노동활동은 입주자의 건강상태, 기능 수준, 욕구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종사자와 입주자에 대한 인권교육

ㅇ시설장은 종사자와 입주자를 대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ㅇ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영역, 입주자의 권리,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 방법, 입주자 간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ㅇ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의 방문객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평등한 처우

입주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차별을 당하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신체적 자유 보장 및 개성 존중

1)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신체 제한(억제) 관리 지침」 참조)
2) 의복과 머리 모양 존중
3) 개인적 생활 스타일 존중

라.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참조)

마.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 인권개념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인권을 고려한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3) 특정 질환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사. 일상생활 지원에 있어서 인권 보호

1) 질 높은 영양 및 식사서비스 제공
2)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제공
3) 여가·문화생활의 욕구충족 노력

아. 개별적 욕구 및 특수욕구에 대한 합리적 존중

1)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하게 할 권리 보장
2)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자.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1)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보장
2)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보장

차.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 해결 노력

1)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2)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카. 가족 또는 외부인과의 교류 지원

1)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2)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보장

타. 입주자 간 상호존중을 위한 노력

1) 이웃 입주자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2) 입주자 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조치 제공

6. 퇴거 단계의 인권 보호

가. 퇴거 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퇴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1) 퇴거 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2) 퇴거에 관한 의사 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3) 부당한 사유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나.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제공

1)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2)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3)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4) 사후처치, 가족보호 및 존엄한 장례서비스의 제공
5) 유류품 처리에 있어서 입주자의 유지존중

제2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행위

가. 노인학대의 유형 및 대표적 행위

유형	행 위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ㅇ노인을 폭행한다. ㅇ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ㅇ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ㅇ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ㅇ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ㅇ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ㅇ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ㅇ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ㅇ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ㅇ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ㅇ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ㅇ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ㅇ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ㅇ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유형	행 위	대표적 행위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ㅇ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방임	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ㅇ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ㅇ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ㅇ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ㅇ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ㅇ노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둔다.

나.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 노인학대 예방 방안

ㅇ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ㅇ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ㅇ 종사자와 입주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ㅇ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ㅇ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ㅇ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 사용한다.

ㅇ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ㅇ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ㅇ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

가. 노인의 대응방안

ㅇ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해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한다.

ㅇ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입주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

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ㅇ입주 노인은 이웃 노인이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종사자 차원의 대응방안

ㅇ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소속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ㅇ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해야 하며, 의사에 반해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입주자 및 종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ㅇ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바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처를 해야 한다.

ㅇ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 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

ㅇ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ㅇ입주 노인과 관련하여 학대 피해자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한다.

ㅇ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감시(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한다.

5. 노인학대 사례 개입

가. 학대사례 조사와 사정

ㅇ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ㅇ시설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별지1의 '노인학대 판정지표'(2015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참조)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피해 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ㅇ시설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거주 노인과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ㅇ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ㅇ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ㅇ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ㅇ학대 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ㅇ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학대사례 판정

ㅇ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 중 4명 이상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 1명 이상, 입주자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ㅇ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 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서는 '2015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ㅇ학대 사례를 판정하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삼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ㅇ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ㅇ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서는 학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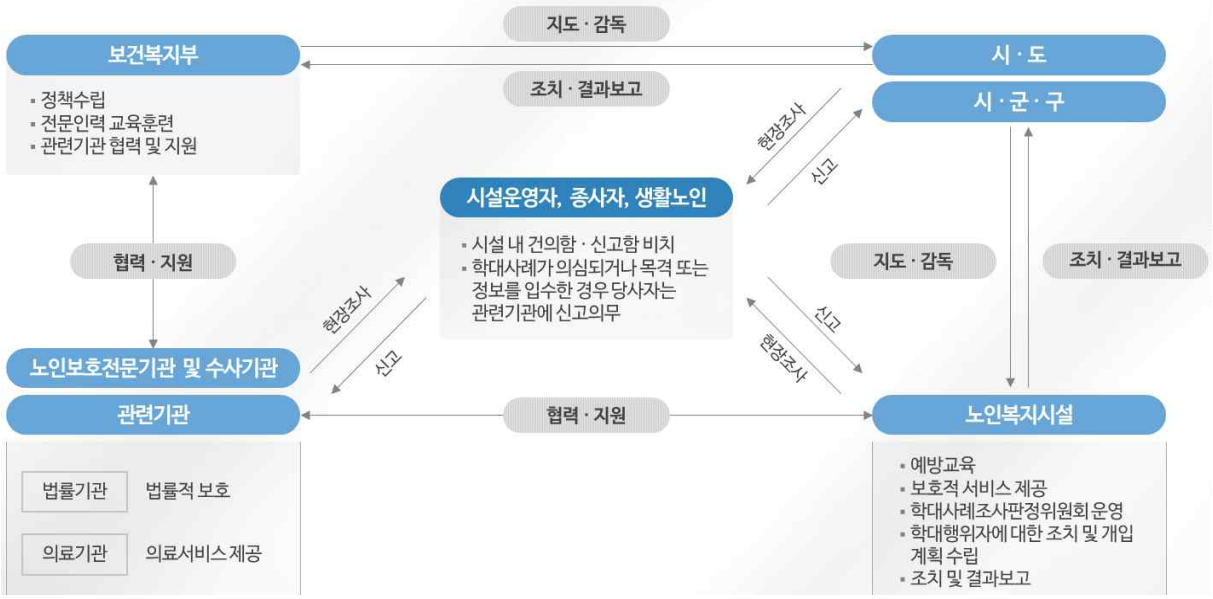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개입과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별지1] 노인학대판정지표

노인학대 판정지표

○ 신체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다.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 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라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 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성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해 놓는다.

○ **경제적 학대**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찾아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를 바꾼다.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방임**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 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병간호를 소홀히 한다(악취,욕창,염증 등 발생).

○ **방임-자기방임**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유기**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 판정지표는 노인학대 유형을 판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학대여부를 판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예) 대표적 행위 한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당 학대유형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유형을 판정해야 함.